

인천광역시 군·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인천광역시

인천광역시 군·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1087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4. 2. .
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1. 개정사유

- 가. 행정구역 개편 사항 반영
- 나.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일부 광역의원 선거구 변경사항 및 기초의원 총정수 변동사항 반영
- 다. 인구 변동에 따른 선거구간 의원1인 당 인구편차 심화 및 인구대비 구별 기초의원 정수 불균형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군·구의회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의 획정(안)에 따라 군·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를 변경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를 변경함[조례 제2조 별표]

3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 검토와 발취사항

인천광역시조례 제 호

인천광역시 군·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인천광역시 군·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조례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인천광역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 정수(제2조 관련)

선거구명	선출인원			선거구역
	계	비례	지역구	
합 계	116	15	101	
중 구	(7)	(1)	(6)	
가선거구			2	연안동, 신흥동, 도원동, 율목동, 동인천동
나선거구			4	신포동, 북성동, 송월동, 영종동, 운서동 , 용유동
동 구	(7)	(1)	(6)	
가선거구			3	만석동, 화수1·화평동, 화수2동, 송림1동, 송림4동, 송현3동
나선거구			3	송림2동, 송림3·5동, 송림6동, 송현1·2동, 금창동
남 구	(16)	(2)	(14)	
가선거구			4	도화1동, 도화2·3동, 주안1동, 주안5동, 주안6동
나선거구			3	주안2동, 주안3동, 주안4동, 주안7동, 주안8동
다선거구			3	송의1·3동, 송의2동, 송의4동, 용현1·4동, 용현2동, 용현3동
라선거구			2	용현5동, 학익1동
마선거구			2	학익2동, 관교동, 문학동
연 수 구	(10)	(1)	(9)	
가선거구			2	송도1동, 송도2동
나선거구			3	옥련1동, 옥련2동, 동춘1동, 동춘2동, 동춘3동
다선거구			4	선학동, 연수1동, 연수2동, 연수3동, 청학동

선거구명	선출인원			선거구역
	계	비례	지역구	
남 동 구	(16)	(2)	(14)	
가선거구			3	논현1동, 논현2동, 논현고잔동
나선거구			2	구월1동, 구월4동, 남촌도림동
다선거구			3	구월2동, 구월3동, 간석1동, 간석2동, 간석4동
라선거구			3	간석3동, 만수2동, 만수3동, 만수5동
마선거구			3	만수1동, 만수4동, 만수6동, 장수서창동
부 평 구	(19)	(2)	(17)	
가선거구			4	부평1동, 부평4동, 부평5동, 부개1동, 부개2동
나선거구			2	일신동, 부평2동, 부평6동
다선거구			3	부평3동, 산곡3동, 십정1동, 십정2동
라선거구			2	갈산1동, 갈산2동, 청천2동
마선거구			3	삼산1동, 삼산2동, 부개3동
바선거구			3	청천1동, 산곡1동, 산곡2동, 산곡4동
계 양 구	(11)	(2)	(9)	
가선거구			2	효성1동, 효성2동
나선거구			2	작전1동, 작전2동, 작전서운동
다선거구			2	계산1동, 계산2동, 계산3동
라선거구			3	계산4동, 계양1동, 계양2동

선거구명	선출인원			선거구역
	계	비례	지역구	
서 구	(16)	(2)	(14)	
가선거구			4	검단1동, 검단2동, 검단3동, 검단4동, 검단5동
나선거구			3	검암경서동, 청라1동, 청라2동
다선거구			3	신현원창동, 연희동, 가정1동, 가정2동, 가정3동
라선거구			2	석남1동, 석남2동, 석남3동
마선거구			2	가좌1동, 가좌2동, 가좌3동, 가좌4동
강 화 군	(7)	(1)	(6)	
가선거구			3	강화읍, 하점면, 양사면, 송해면, 교동면
나선거구			3	선원면, 불은면, 길상면, 화도면, 양도면, 내가면, 삼산면, 서도면
용 진 군	(7)	(1)	(6)	
가선거구			2	북도면, 덕적면, 연평면
나선거구			2	자월면, 영흥면
다선거구			2	백령면, 대청면

현행 군·구의회의원 선거구와 2014년도 획정(안) 비교표

현행 선거구역표				획정(안) 선거구역표			
[별표]				[별표]			
선거구명	선출인원			선거구명	선출인원		
	계	비례	지역구		계	비례	지역구
합 계	112	15	97	합 계	116	15	101
중 구	(7)	(1)	(6)	중 구	(7)	(1)	(6)
가선거구			3	연안동, 신흥동, 도원동, 울목동, 동인천동			2
나선거구			3	신포동, 북성동, 송월동, 영종동, 용유동			4
동 구	(7)	(1)	(6)	동 구	(7)	(1)	(6)
가선거구			3	만석동, 화수1·화평동, 화수2동, 송현1·2동			3
나선거구			3	송현3동, 송림1동, 송림2동, 송림3·5동, 송림4동, 송림6동, 근창동			3
남 구	(17)	(2)	(15)	남 구	(16)	(2)	(14)
가선거구			3	도화1동, 도화2·3동, 주안1동, 주안5동, 주안6동			4
나선거구			2	주안2동, 주안4동			3
다선거구			2	주안3동, 주안7동, 주안8동			3
라선거구			2	송의1·3동, 송의2동, 송의4동			3
마선거구			2	용현1·4동, 용현2동, 용현3동			2
바선거구			2	용현5동, 학익1동			2
사선거구			2	학익2동, 관교동, 문학동			2
연 수 구	(9)	(1)	(8)	연 수 구	(10)	(1)	(9)
가선거구			2	옥련1동, 옥련2동, 송도동			2
나선거구			2	동춘1동, 동춘2동, 동춘3동			3
다선거구			2	선학동, 연수2동, 연수3동			4
라선거구			2	연수1동, 청학동			2
남 동 구	(14)	(2)	(12)	남 동 구	(16)	(2)	(14)
가선거구			3	구월1동, 구월4동, 남촌도림동, 논현동, 논현고잔동			3
나선거구			3	구월2동, 구월3동, 간석1동, 간석2동, 간석4동			2
다선거구			3	간석3동, 만수2동, 만수3동, 만수5동			3
라선거구			3	만수1동, 만수4동, 만수6동, 장수서창동			3
부 평 구	(19)	(2)	(17)	부 평 구	(19)	(2)	(17)
가선거구			3	부평1동, 부평4동, 부평5동			4
나선거구			2	부개1동, 부개2동, 일신동			2
다선거구			2	부평2동, 부평6동, 산곡3동			3
라선거구			2	부평3동, 십정1동, 십정2동			2
마선거구			2	갈산1동, 갈산2동, 청천2동			3
바선거구			3	삼산1동, 삼산2동, 부개3동			3
사선거구			3	청천1동, 산곡1동, 산곡2동, 산곡4동			3
계 양 구	(11)	(2)	(9)	계 양 구	(11)	(2)	(9)
가선거구			2	효성1동, 효성2동			2
나선거구			3	작전1동, 작전2동, 작전서운동			2
다선거구			2	계산1동, 계산2동, 계산3동			2
라선거구			2	계산4동, 계양1동, 계양2동			3
서 구	(14)	(2)	(12)	서 구	(16)	(2)	(14)
가선거구			3	검단1동, 검단2동, 검단3동, 검단4동			4
나선거구			2	검암정서동, 연희동			3
다선거구			2	가정1동, 가정2동, 가정3동			3
라선거구			3	신원원창동, 석남1동, 석남2동, 석남3동			2
마선거구			2	가좌1동, 가좌2동, 가좌3동, 가좌4동			2
강 화 군	(7)	(1)	(6)	강 화 군	(7)	(1)	(6)
가선거구			3	강화읍, 하점면, 양사면, 송해면, 교동면			3
나선거구			3	선원면, 불은면, 길상면, 화도면, 양도면 내가면, 삼산면, 서도면			3
용 진 군	(7)	(1)	(6)	용 진 군	(7)	(1)	(6)
가선거구			2	북도면, 덕적면, 연평면			2
나선거구			2	자월면, 영흥면			2
다선거구			2	백령면, 대청면			2

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	<p>□ 공직선거법 및 공직선거법시행령, 공직선거관리규칙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직선거법 제23조(자치구·시·군의회의 의원정수) 제24조(선거구 획정위원회) 제10항 ○ 공직선거법 제26조(지방의회의원 선거구의 획정) ○ 공직선거법시행령 제3조(자치구·시·군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명칭) ○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조(자치구·시·군의회의 의원정수 산정기준)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margin-top: 20px;">“별 첨”</p>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없음”
관련자료	“해당없음”

□ 공직선거법

제23조(자치구·시·군의회의 의원정수) ① 시·도별 자치구·시·군의회의원의 총정수는 별표 3과 같이 하며, 자치구·시·군의회의 의원정수는 당해 시·도의 총정수 범위 내에서 제24조(선거구획정위원회)의 규정에 따른 당해 시·도의 자치구·시·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자치구·시·군의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한다.

② 자치구·시·군의회의 최소정수는 7인으로 한다.

③ 비례대표자치구·시·군의원정수는 자치구·시·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.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.

[전문개정 2005.8.4.]

제24조(선거구획정위원회)

⑩ 국회가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거나, 시·도의회가 자치구·시·군의원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. <개정 2005.8.4.>

제26조(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) ① 시·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(이하 "시·도의원지역구"라 한다)는 인구·행정구역·지세·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자치구·시·군(하나의 자치구·시·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하며,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국회의원지역구와 행정구역이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행정구역을 말한다)을 구역으로 하거나 분할하여 이를 획정하되, 하나의 시·도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시·도의원정수는 1명으로 하며, 그 시·도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이 한다. <개정 1995.4.1, 2010.1.25>

② 자치구·시·군의원지역구는 인구·행정구역·지세·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, 하나의 자치구·시·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·시·군의원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며, 그 자치구·시·군의원지역구의 명칭·구역 및 의원정수는 시·도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05.8.4>

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·도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·

시·군의원지역구를 확정하는 경우 하나의 읍·면(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행정면을 둔 경우에는 행정면을 말한다. 이하 같다)·동(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행정동을 둔 경우에는 행정동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시·도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·시·군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. <개정 1995.4.1, 2005.8.4, 2010.1.25>

- ④ 자치구·시·군의원지역구는 하나의 시·도의원지역구 내에서 확정하여야 하며, 하나의 시·도의원지역구에서 지역구자치구·시·군의원을 4인 이상 선출하는 때에는 2개 이상의 지역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. <신설 2005.8.4.>

□ 공직선거법 시행령

제3조(자치구·시·군의원지역선거구 명칭)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구·시·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은 자치구·시·군의 명칭 뒤에 가, 나, 다를 붙여 표시한다.

[전문개정 2005.9.14.]

□ 공직선거관리 규칙

제4조(자치구·시·군의회의 의원정수 산정기준) ① 법 제23조(자치구·시·군의회의 의원정수)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치구·시·군의회의 의원정수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.

1. 자치구·시·군의회의 의원정수는 법 별표 3의 시·도별 자치구·시·군의회의원의 총정수의 범위 내에서 자치구·시·군별 인구 비율과 읍·면·동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. 이 경우 자치구·시·군의회의 의원정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 및 읍·면·동수의 기준일은 최근의 통계에 따라 법 제24조(선거구획정위원회)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당 시·도의 자치구·시·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한다.

2. 비례대표선거구자치구·시·군의회의원(이하 "비례대표자치구·시·군의원"이라 한다)정수는 자치구·시·군의회의 의원정수에서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먼저 정하고, 지역선거구자치구·시·군의회의원(이하 "지역구자치구·시·군의원"이라 한다)정수는 그 나머지 인원으로 한다.

② 지역구자치구·시·군의원정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자치구·시·군 안에서 지역선거구별로 의원 1인당 인구수의 편차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05.8.4]

[종전 제4조는 제4조의2로 이동 <2005.8.4>]